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6가단5260700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432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6가단5260700 판결

전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 변호사 송일균, 오엘림, 최성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변론 종결 2017. 11. 20.

판결 선고 2018. 6.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각 대출을 특정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대출'이라 한다).

표

순번	여신개시일	대출과목	최초 여신금액	양도 당시 잔액
1	2007. 2. 23.	소매금융일반대출	50,000,000원	100,000,000원 ¹⁾
2	2007. 6. 2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50,000,000원	90,000,000원 ²⁾
3	2009. 7. 15.	기업운전일반대출	100,000,000원	54,000,000원
4	2010. 10. 7.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70,000,000원	70,000,000원
5	2014. 1. 28.	기업운전분할대출	30,000,000원	5,000,000원
6	2014. 12. 2.	기업운전분할대출	50,000,000원	36,088,000원
7	2015. 2. 23.	기업운전분할대출	30,000,000원	21,250,000원

나. D은 제1~4대출을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대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을 하거나 일부 변제를

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제1대출금 채무가 발생될 무렵에 6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한정근보증을 하였고, 이후 매년 기한을 1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연장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

2014. 2. 11. 위 대출의 기한이 2015. 2. 23.로 연장되었고, 피고는 위 기한 연장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라. 피고는 제4대출금 채무가 발생될 무렵에 84,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한정근보증을 하였고, 이후 매년 기한을 1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장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

2014. 10. 6. 위 대출의 기한은 2015. 10. 7.까지 연장되었고, 피고는 위 기한 연장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이하 피고의 근보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보증'이라 하고, '제1보증, 제2보증'이라 특정한다).

마. D은 2016. 3. 29.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과 위 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3. 30. C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양도 당시의 대출금 잔액은 위 표'양도 당시 잔액'란 기재와 같다.

바. 한편, D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2011. 11. 11.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고, C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E)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2016. 8. 26.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 3순위로 합계 180,000,000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받았다.

사. 2016. 8. 26.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잔액 및 이자 등 합계는 409,674,4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10~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이 사건 각 근보증의 피담보채무이고, 이 사건 배당금을 위대출금 채무에 충당한 이후의 대출금 잔액이 이 사건 각 근보증의 한도액 합계144,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한도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금융감독원은 2012. 5. 2. 이후에는 법인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실제 경영자가 아닌 개인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지침을 정하였고, 피고는 위 지침을 적용받기로 D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근보증에 따른 보증책임이 없다.

이 사건 각 근보증은 제1대출금 채무와 제4대출금 채무를 담보하는 특정 근보증이므로,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된 이 사건 배당금은 법정충당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제1, 4대출금 채무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충당 후 제1, 4대출금 채무의 잔액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한 다.

3. 판단

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면제 여부

을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2012. 2. 14. 법인의 실제 경영자만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연대보증 개선방안(이하 '이 사건 개선방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에 대하여는 2012. 5. 2.부터 개선방안을 전면 적용하고, 기존 여신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만기 연장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채택한 증거들, 갑 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과 피고 사이에 위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각 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2014. 10. 6. 제4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개선 방안을 설명들었고 위 개선방안을 적용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② 별지 기재의 경과 규정과 같이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 사건개선방안을

적용받기로 하였다. 제2보증에 관하여 피고가 위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기를 D에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제2대출에 대해서 보증한도액 180,000,000원으로 정한 근보증을 하였다가 2012. 6. 29. 대출기한이 연장될 때 위 보증을 해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제4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것은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근보증의 성격과 이 사건 배당금의 총당 주장에 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근보증서에는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증인으로 하여금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의 세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근보증서에 의하면 한정근보증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보증인이 피담보채무를 특정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한정하고 싶은 경우 '특정근보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각 대출은 C의 기업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F의 배우자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과 피고가 '이 사건 근보증계약 체결 이후 실행된 대출과 동일한 종류의 거래로 인하여 C이 D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로 이 사건 각 근보증의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근보증이 제1, 4대출금 채무에 대한 특정 근보증임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금이 위대출금 채무에 우선 총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대출의 2016. 8. 26. 기준 가액이 409,674,470원(= 원금 376,338,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33,336,470원)이고 이 사건 배당금은 180,000,000원임은 앞서 보았는바 그 차액은 이 사건 각 근보증의 보증한도액 합계 144,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1) 2010. 5. 6. 100,000,000원으로 증액

2) 2011. 6. 27. 90,000,000원으로 감액